

## 신규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8조(학생 대표 평의원의 선출)</p> <p>① 학생 대표 평의원 중 1명은 학부생의 대표인 총학생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총학생회장 부재시에는 <u>학생대표자운영위원회</u>에서 선출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학생 대표 평의원의 선출)</p> <p>① 학생 대표 평의원 중 1명은 학부생의 대표인 총학생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총학생회장 <b>부재 혹은 휴학일 경우에는 전체학생대의원 회의</b>에서 선출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	<p>학생회칙 개정에 따른 학부생 대표 평의원 관련 사항 변경</p>